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한 동의안

의안 번호	2358
----------	------

제출년월일 : 2018년 2월 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광진구 자양유수지 주변은 주택과 아파트단지가 혼합된 주거 밀집지역으로 초·중·고등학교 13개교가 위치하고 있으나 생활권형 공공문화서비스 시설이 열악하여 날로 증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복합시설 건립부지 확보가 시급한 지역임.
- 나. 주민친화적 공간 조성 측면을 고려할 때 유수지 본래의 기능은 유지하면서 토지 복합화를 통한 유수지 상부에 문화복합시설(공공도서관 및 체육관)을 건립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체육 수요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자 함.
-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사유지인 유수지의 관리업무는 자치구청장으로 위임되어 있으나, 토지 소유는 서울시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유수지 상부에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토지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4번지
- 면 적 : 18,235.5 m^2
- 소 유 자 : 서울특별시
- 도시계획시설 : 유수지, 문화시설, 주차장(중복결정)

나.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안)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594번지
- 건립규모 ▮ 인공지반 2,893.51 m^2
 - ↳ 지상3층, 연면적 3,000 m^2
- 주요시설
 - ▶ 도서관 : 종합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보존서고, 강의실, 북카페, 어린이·유아자료실, 문화교실 등
 - ▶ 체육관 : 다목적체육관(탁구, 농구, 배드민턴 등), 샤워실 등 부대시설
- 사업비 : 12,303백만원[국비 2,798, 시비 2,830, 구비 6,675]
- 사업기간 : 2015. 6. ~ 2019. 7.

다. 그간의 추진사항

- 기본계획 수립 2015. 8.17.
- 서울시 투자심사(조건부, 2단계) 2015.10.31
- 자양유수지 문화복합시설 건립계획 수립 2016.05.30.
- 기본 및 실시설계 2016.10.04. ~ 2017.12.07.
- 구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광진구의회) 2016.12.16.
- 광진구 건축위원회 심의 2017. 3. 9.
- 도서관 사전평가(문화체육관광부) 2017.04.27.
- 서울시 투자심사(2단계) 2017. 5.30.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17. 9.20.
- 서울시 경관심의 2017. 10. 18.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주차장) 결정·고시 2017.10.26.
- 서울시 경제성심사(VE) 2017.11.22. ~ 2017.12.04.
- 서울시 계약심사 2017.12.28. ~ 2018.01.18.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2018.01.25.

라. 향후 추진일정

- 공사발주 2018. 2월
- 착 공 2018. 3월
- 준 공 2019. 7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 제14839호, 시행 '17. 7.26.]

제13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법률 제28577호, 시행 '18. 1. 9.]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 제2항제1호의 공용재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4호, 시행 '17. 12. 27.]

제7조(영구시설물의 축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그 설치하는 시설물로 인해 사용용도·목적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여야 한다.

②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할 경우 <별표 2>의 내용을 참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2] 영구시설물 축조 기준 (제7조 관련)

8.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국가는 제외)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소유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문서상 합의가 있어야 하며,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나. 토지 소유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 공용건축물(청사, 관사, 예술회관, 시·도립학교·박물관·도서관 등)이 아닌 공공용 시설물(도로, 제방, 하천, 공원, 구거, 우수지, 전용 노외주차장, 주차빌딩 등) 등의 영구시설물은 해당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700호, 시행 '18. 1. 4.]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③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하천관리과장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사무를 재산소재지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위치도 및 배치도



위 치 도



배 치 도

※ 작성자 : 하천관리과 치수관리팀 구자일 (☎ 2133-3873)